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http://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mailto: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1 - 528호

시행일자 2021. 11. 30.

수 신 국토안전관리원장

참 조 건설안전본부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철저 요청

1. 국가 건설공사와 시설물 안전을 위해 진력하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타워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은 한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금년 9월 17일부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점검토록 하였고, 다른 정기안전점검과 달리 동조 6항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자가 설치, 인상, 해체 과정에 입회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요지입니다.
3. 또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조치를 하게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09.17. 시행)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벌점 3점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귀 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4호, 2021.6.29.시행)’ [별표1]에 따라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점검횟수를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아 시공사와 안전진

단전문기관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점검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며,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와 시공사, 점검기관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래 내용에 따라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점검대상

타워크레인이 여러대인데도 설치, 인상, 해체 3회만 반영

→ (시정) 타워크레인 대수×(설치시+인상시×인상횟수+해체시)로 반영 확인

예) 25층 아파트 공사에 타워크레인을 10기 설치한 경우

$10기 \times (1+1 \times 5회+1) = 70회$  점검

(2) 타워크레인 점검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자가 매 타워크레인마다 설치, 인상, 해체 시마다 하루종일 입회하여 점검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8항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 대가 반영 여부 확인.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